

대구광역시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679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9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정이유

도심 내 유희공간을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점시설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활력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)

다.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)

라.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117조 등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8. 10. ~ 8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신설규제 1건(원안가결)

- 2023년도 제3회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·의결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2건(반영)

가) 별표 1 냉난방기 이용료 관련하여 냉·난방비 부과에 대해 시설대관 또는 프로그램 이용 등 부과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으로 프로그램 이용료에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, 냉·난방비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

⇒ 냉·난방기 이용료 부과는 시설 대관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

나) 별지 서식 이용신청서 상에 감면에 대한 내용이 없어, 감면대상 이용자가 감면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, 신청서에 ‘이용료 감면여부란 추가’, ‘감면대상 명시’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

⇒ 별지 서식에 ‘이용료 감면여부’란 추가

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도시 활력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구광역시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(이하 “거점시설”이라 한다)”이란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가로(街路)나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면서 빈건물, 폐공장, 폐창고, 빈집, 빈점포 등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이용자”란 거점시설을 이용하려고 신청한 자 또는 거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·체험 등의 프로그램 수강자 및 전시·공연의 관람자를 말한다.
3. “이용료”란 거점시설의 대관료·입장료, 거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·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등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거점시설의 설치) ① 대구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유희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주요사업) 거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거점시설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

2.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·개발·홍보사업
3.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
4. 청년층 중심 문화행사 및 창작 연습 공간 제공
5. 그 밖에 거점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

제5조(거점시설의 이용) ① 거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 시설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이용 허가를 할 때에 신청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, 이용료,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.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,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변경 결정을 할 경우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용제한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점시설의 관리·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4. 이용자가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거점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이용료 징수 등) ① 시장은 거점시설 이용 신청자 및 거점시설에서 시행하는 운영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: 전액 면제
2. 비영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: 이용료의 50% 감액
3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이용료 반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전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거점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

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

1.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: 전액 반환
2. 이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: 80% 반환
3.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: 50% 반환
4.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: 20% 반환

제9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 ① 거점시설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거점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③ 이용자가 고의·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·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운영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

탁자”라 한다)에게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승인)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거점시설 내 부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거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일체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,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 계약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
2. 수탁자가 위·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이용 목적과 사업수행계획에 위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
4.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5.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4조(자체 운영규정)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거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·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

명 칭	위 치
무영당	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8 (서문로1가 58)
꽃자리다방	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07 (북성로1가 17-2)
경북문인협회	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80-1 (북성로1가 35-1)

[별표 2]

시설 이용료 기준(제7조 관련)

구 분		이 용 기 준	이 용 료(원)	비 고
시 대 관	100㎡ 미만	2시간 (초과시간당)	20,000 (5,000)	무영당 꽃자리다방 경북문인협회 공통 적용
	100㎡ ~ 200㎡		30,000 (7,500)	
	미만		40,000 (10,000)	
	200㎡ ~ 300㎡			
	300㎡ 이상		60,000 (15,000)	1일 한도 100,000원
프로그 램 이 용	강 좌	1회	10,000	상한액
	체 험 프 로 그 램	1회	10,000	"
	기 타 (공 연·전 시 등)	1회	15,000	"

1. 시설 대관에 대한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기준금액의 50%의 이용료를 가산한다. 다만,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.
2.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시간으로 보고 이용료를 부과한다.
3. 설비 설치(철거) 및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.
4. 시설 이용 중 냉·난방 필요 시 별도 신청하여야 하며, 냉·난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20%를 가산하여 부과한다.
(단, 냉·난방기 이용료 부과는 시설 대관에 한함)

[별지 서식]

거점시설 이용(허가, 변경, 취소)신청서(제5조 관련)

신 청 인	주 소		
	성 명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 명과 대표자명)	전 화 번 호	
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이용시설 및 공간			
이 용 일 시	년 월 일 시부터	인원	
	년 월 일 시까지 (시간)	명	
이 용 목 적			
기 타			
이 용 료	금 원(W)	이 용 료 감면여부	
<p>「대구광역시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성 명(회사명) : (인 또는 서명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100px;">대표자(대표이사):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대구광역시장 귀하</p>		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

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-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

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

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“민간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- 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- 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- 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- 3. 경제적 효율성
-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- 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공유재산 운영기준 (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 발췌)

3. 용어의 정의

- 가. 위탁료 :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
- 나. 사용료 :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
- 다. 이용료 :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(수영장 입장료, 문화회관 관람료 등)

대구광역시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유희공간 활용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 수반을 최소화하여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 김 옥 현